



제14회 서울국제수산물전시회

SEOUL INT'L SEAFOOD SHOW 2018

2018. 5. 9(수) ~ 11(금) | COEX Hall D

| CONTACT US |

서울국제수산물전시회 사무국 (0616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419호
 T. 02-6000-2800 F. 02-6000-2805 E-mail. 3s@seoulseafood.com www.seoulseafood.com

제14회 서울국제수산물전시회

행사개요

일시	2018년 5월 9일(수) ~ 11일(금)
장소	코엑스 3층 D홀
규모	200개사 400부스
부대행사	국내외바이어 상담회, 영양사세미나, ASC/MSC 인증세미나, 수산물 유통세미나, 수산식품 기술세미나, 수산업 관련 세미나
수출상담회	해외바이어 초청 40명(품목별 매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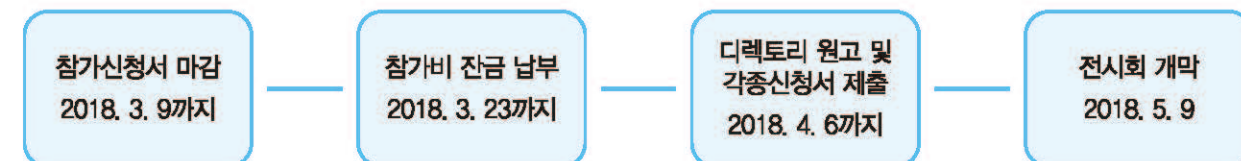
전시품목

수산물	어패류, 선어, 수입수산물
수산가공품	냉장·냉동품, 조미가공품, 염장식품, 건조식품, 구이제품, 어묵·해조류, 씨푸드 스낵, 통조림
초밥·회 관련 식품	횡감, 밑반찬, 소스
기타식품	간장·어장, 와사비, 소금, 식품첨가물, 주류 및 음료, 프랜차이즈
수산기자재	수산물가공기기, 포장·보관장치, 물류기기, 냉동·냉장기기, 양식기자재
급식기자재	식품위생관리기기, 주방·요식기기, 식품보존기술, 식품검사분석기, 안전바닥재, 식품 관련 IT
콜드체인	저온유통, 냉장·냉동업, 냉장·냉동기기, 냉장·냉동시스템
수산물관련정보	수산정책홍보, 지자체홍보관, 어촌어항홍보

주요바이어

수산물 유통업 종사자	수산업 종사자	수산물 정책 입안자	수산 무역 종사자	수산물 구매자	언론 종사자	식품 영양사	냉장·냉동 관련 종사자
-------------	---------	------------	-----------	---------	--------	--------	--------------

참가안내



참가비

(단위 : 원, 부가세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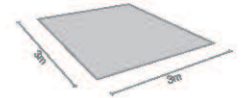
구분	독립부스 (Raw Space)	조립부스 (Shell Stand)	프리미엄부스 (Premium Booth)
참가비(부스당)	2,200,000	2,500,000	2,800,000

※ 해양수산부 지원 1,000,000원(예정) 확정 후 전체 공지

부스안내

독립부스

전시면적(9㎡=3mX3m)만 제공
전시용 부스 장치 등은 참가업체가 장치업체를 선정하여 직접시공
※ 부스공사는 코엑스 지정공사업체만 가능



조립부스

전시면적(9㎡) 및 기본부스를 함께 제공
기본부스 : 옥타늄시스템(3mX3mX2.4m)
상호간판 : 전면 상단설치
기본조명 : 형광등(40W) 1개, 조명등(100W) 4개
전기 : 기본 1Kw 공급(주간용)
부스바닥 : 방염파이텍스
가구설비 : 안내데스크(1mX0.75mX0.5m) 및 의자 각 1개
※ 조기신청시 2면 오픈 우선순위 진행(별도 비용 없음)

프리미엄부스

일반 독립부스 장치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조립부스와는 차별화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한 프리미엄 조립부스(전시면적 동일)
기본부스 : 맥스시스템(3mX3mX3.5m)
상호간판 : 전면 상단설치
전기 : 기본 1Kw 공급(주간용)
부스바닥 : 방염파이텍스
가구설비 : 안내데스크(1mX0.75mX0.5m) 1개, 원형테이블&의자 세트 1조, 카탈로그거치대 1개
※ 기본적으로 2면 오픈

부스배정

부스형태 및 규모(1순위 : 독립부스, 2순위 : 프리미엄부스, 3순위 : 조립부스), 부스수량, 참가신청 순, 국적, 전시품목 반영하여 신청마감 후 결정

참가신청

신청서 작성 후 Fax나 이메일로 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본(세금계산서 발행용) 송부
※ 참가비 납입방법

구분	납입기한	금액
계약금	참가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신청 부스비 총액의 50%
잔금	2018. 3. 23까지	잔금 50%

입금은행 : 신한은행 | 은행계좌 : 140-005-183027 | 예금주 : 비투엑스포㈜ | 담당자 : 이세민 대리
※ 송금시 보내는 사람 기재란에 회사명을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 및 계약서

서울국제수산물전시회 사무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419호 T. 02-6000-2800 F. 02-6000-2805 E. 3s@seoulseafood.com

1. 신청 및 계약자

업 체 명	(국문)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우편물수령주소		
전 화		팩 스
담 당 자		직 위
휴대전화		E-mail
전시품목		홈페이지

2 참가부스 신청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구분	참가비(2018. 3. 23까지)	비 고
독립부스	2,200,000	2부스 이상 신청가능
조립부스	2,500,000	부스사이즈 : 3m X 3m
프리미엄 부스	2,800,000	부스사이즈 : 3m X 3m
		(맥스시스템+비품세트)
신청수량		부스
신청금액		원

※ 이면의 전시회 출품 규정을 수락하고 계약금(참가비 50%)과 아래의 첨부서류를 동봉하여 위와 같이 참가를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 신한은행 :계좌번호 140-005-183027, 예금주 : 비투엑스포(주), 담당자 : 이세민 대리

▶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세금계산서 발행용)

20 년 월 일

계약자 :신청인 (대표자) _____ (인/서명)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

제1조 (용어의 정의)

“전시자” 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계약서 및 신청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회사,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전시회” 라 함은 “2018 서울국제수산물전시회” 를 말한다.
“주최자” 라 함은 (사)한국수산회, “주관자” 라 함은 비투엑스포(주)를 말하며, “행사사무국” 은 비투엑스포(주)를 말한다.

제2조 (전시스페이스 할당)

행사사무국에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전시장 내 각 업체의 위치를 배정한다.

제3조 (계약, 신청 및 참가비 납부절차)

참가신청 및 계약서는 행사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참가비(부스비용)의 50%(부가세포함)를 계약금으로 납부한다.
잔금(부스비용의 50%(부가세포함))은 2018년 3월 23일까지 납부한다.
- 계좌번호 : 140-006-183027 신한은행
- 예 금 주 : 비투엑스포(주)

제4조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행사사무국이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자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 보안 및 안전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
행사사무국은 전시자 및 참관객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시장 경비를 운용하나, 전시자의 모든 물품의 도난, 파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제6조 전시품 제한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행사사무국의 별도 허가 없이 전시장내 판매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제7조 참가신청해지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참가취소 및 해약금)

전시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해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후 15일 이내에 행사사무국에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해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시 반환한다.
- 2018. 3. 23 이전 취소할 경우 :
참가비(부스비) 또는 축소분의 50%를 위약금(부가세 없음)으로 납부
- 2018. 3. 24 이후 취소할 경우 :
참가비(부스비) 또는 축소분의 100%를 위약금(부가세 없음)으로 납부

제9조 (해약)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와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 (전시회 변경)

행사사무국이 국가 위기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전시자는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 (보충규정)

행사사무국은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전시자는 코엑스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에 관한 행사사무국과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 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